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년 12월 8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2월 8일

라. 상정일자 : 2009년 12월 18일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

나. 제안이유

-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 및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주사무소(차고지)가 있는 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함

라. 참고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성 근

○ 본 제정 조례안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은

- 면제대상 규정(안 제3조)

- 구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검토 결과

- 유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